####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토보고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4. 02. 26.

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##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토보고서

#### 1. 경 과

의안 제299호로 2024년 2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# 2. 제안이유

비대면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구민의 경 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서류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중 "주민등록 등본·초본", "가족관계등록부", "제적등본·초본"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(안 제5조4항 신설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2024년 예산 반영

\*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#### 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3. 12. 14. ~ 2024. 1. 3. / 20일 간):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#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대면발급을 비대면발급으로 유도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구민 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.

#### 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5조(수수료의 감면)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"주민등록 등본·초본", "가족관계등록부", "제적등본·초본"을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#### ○ 검토 결과

-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총 122 종<sup>1</sup>)으로 정해져 있으며 본 조례의 조항 신설과 관련된 민원 증명서는 총 12종임<sup>2</sup>).

#### 2)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에 따른 변동사항

(단위: 원)

업무	민원증명	중	현행 수수료	개정 후 수수료	온라인 발급 (민원24)
계		12			
주민등록	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	2	200		
가족관계 등록부	가족관계증명서(폐쇄증명 포함)	2	500	무료	무료
	기본증명서(폐쇄증명 포함)	2			
	혼인관계증명서(폐쇄증명 포함)	2			
	입양관계증명서(폐쇄증명 포함)	2			
제적	제적등본	1	500		
	제적초본	1	300		

<sup>1)</sup>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-85호

- 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제28조제2항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문서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음. "감면"의 국립국어원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"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함"으로 되어 있는바, 개정을 통한 조항 신설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.
-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일부 서류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무인민 원발급기의 이용을 유도하고, 이에 따른 구민의 만족도도 제고 될 것으로 사료됨. 또한,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구민이 줄어들어 유연하게 행정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, 수수료 면제로 인한 세입 감소3)보다 추후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의 폭이 더 넓다고 판단됨.
- 다만, 관내 설치된 총 41대4)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유동 인구가 많고, 상업지역에 속하는 여의동 현장민원실, 여의도역 같은 경우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이용자는 구민이 아닌 자들이 많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.

<sup>3) 2022</sup>년 무인민원발급기 중 등·초본, 가족관계관련 수수료 수입: 51,626천 원(구 세외수입의 0.04%)

<sup>4)</sup> 동주민센터 18대 설치, 동주민센터 외(구청, 현장민원실, 역사, 주요 병원·은행 등) 23대 설치

# 참 고 자 료

###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28조(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(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 함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#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

제18조(수수료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.

12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

#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

제28조(증명서등의 수수료)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.

14.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